

주주 여러분께

전환사채 발행 공고

상법 제513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2016년 3월 2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발행회사의 상호: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2. 사채의 개요

(1) 사채의 명칭: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제33회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금 이천억원(₩ 200,000,000,000)

(4)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할인을 0.00%)로 한다.

(5)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본 사채"의 경우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같음한다.

(6)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1.00%(이하 "표면 이율"이라 한다)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3개월 복리 연 4.00%로 한다.

(7)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및 이자의 지급

①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05월 17일에 원금의 109.5118%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18년 05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금액:

2018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6.2142%,

2018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7.0263%,

2018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7.8466%,

2019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8.6751%.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주)국민은행 명동대기업금융센터

마.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바.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급장소: (주)국민은행 명동대기업금융센터

(8)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이자 계산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2016년 08월 17일, 2016년 11월 17일, 2017년 02월 17일, 2017년 05월 17일,
2017년 08월 17일, 2017년 11월 17일, 2018년 02월 17일, 2018년 05월 17일,
2018년 08월 17일, 2018년 11월 17일, 2019년 02월 17일, 2019년 05월 17일.

(9)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주)국민은행 명동대기업금융센터

(10) 연체이율: "발행회사"가 본 조 제9항 또는 제10항의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3. 전환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주주우선공모에 의하여 발행하며,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한다.

4. 주주확정일: 2016년 4월 6일

5.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인 2,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전환청구시 소수점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합계액은 본사채의 발행금액인 2,000억원에 미달될 수 있다.)

(3)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 또는 등록필증으로 전환 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명의개서대리인인 (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 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4) 전환가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6년 03월 22일) 전일을 기산

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①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 전환가액의 조정

①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분항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에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따른 '기준주가'를 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③ 상기의 ①호 및 ②호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6년 08월 17일, 2016년 11월 17일, 2017년 02월 17일, 2017년 05월 17일,
2017년 08월 17일, 2017년 11월 17일, 2018년 02월 17일, 2018년 05월 17일,
2018년 08월 17일, 2018년 11월 17일, 2019년 02월 17일.

④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전환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전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⑤ 위 각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⑥ 위 각호의 사유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전환비율 = 최초 전환비율(100%) × 최초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6)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16년 06월 17일)부터 만기 1개월 전(2019년 04월 17일)까지로 한다.

(7)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

(8)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장소 : (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

(9) 전환청구 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단, 전환사채 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10)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① 전환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전환청구서 및 채권등록필증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

②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11) 기타사항

① 미발행주식의 보유 등 : "발행회사"는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 (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②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청구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 교부하여 상장 완료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환청구 기간 중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전환청구분은 합산하여 당월 말일까지 상장 완료하며, 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전환청구분은 합산하여 익월 15일까지 상장 완료한다. 단, 명의개서대행기관인 (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④ 전환가격 조정 시 공시방법 :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⑤ 전 각 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6.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기간

① 구주주: 2016년 05월 06일(금) ~ 09일(월) (2영업일간)

② 일반공모: 2016년 05월 12일(목) ~ 13일(금) (2영업일간)

(2) 청약방법

① "구주주" 중 명부상 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②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③ 일반공모청약자: "인수단"의 본·지점

(3) 청약방법

①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우선청약권 부여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자(이하 "일반청약자"라 한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출하고 청약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서, 이중청약은 불가하다.

③ ①, ②의 적용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청약자 1인으로 본다.

④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 00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3) 청약단위

①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인 7,334.027205647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은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일반공모의 청약최소단위는 100만원으로 하며,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모집금액"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최소청약단위를 100만원으로 하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00만원 단위,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000만원 단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000만원 단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5억원 단위,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10억원 단위,

500억원 이상은 50억원 단위로 한다.

(4) 청약증거금

①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청약증거금은 2016년 05월 17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6년 05월 17일에 반환한다.

(5) 청약취급처 및 청약방법:

청약대상자		청약사무취급처	청약방법	청약기간
구주주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 주명부 등재 주주)	동부증권(주) 본·지점	본·지점 직접 방문	2016년 05월 06일 ~ 2016년 05월 09일
	실질주주	주주확정일 현재 아이에스동서(주) 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 권회사 본·지점, 동부증권(주) 본·지점	본·지점 직접 방문, HTS/MTS/홈페이지	2016년 05월 06일 ~ 2016년 05월 09일
일반공모청약자		동부증권(주) 본·지점	본·지점 직접 방문, HTS/MTS/홈페이지	2016년 05월 12일 ~ 2016년 05월 13일

(6) 투자설명서의 교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② 교부방법 :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구주주 청약자	1), 2), 3)를 병행 1) 우편발송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대표주관회사"의 HTS/MTS/홈페이지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구주주 청약초일인 2016년 05월 06일 전 수취가능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3)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의 HTS/MTS/홈페이지에서 교부: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일반 청약자	1), 2)를 병행 1)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대표주관회사"의 HTS/MTS/홈페이지에서 교부	1)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의 HTS/MTS/홈페이지에서 교부: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③ 교부일시 : 2016년 05월 12일 ~ 13일(2영업일간)

④ 기타사항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나.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 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라.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7) 배정방법

① 청약구분별 배정

가. 구주주: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의 지분율대로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기 위해 "주주확정일"(2016년 04월 06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7,334.027205647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단, 10,000원 미만은 절사함)으로 하고, 부여된 우선청약권 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한 금액만큼 배정한다. 단, 주주확정일 현재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나. 일반공모: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한다.

② 일반공모에 의한 배정

가. 배정금액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금액이 "일반공모 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금액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합의하에 배정한다.

다. 상기 제"가."에 따른 통합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해당 청약미달분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라. 일반공모 배정단위는 100,000원으로 한다.

마. 청약결과 배정 공고: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배정주식수는 2016년 05월 17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한다.

7. 납입

(1) 납입일: 2016년 05월 17일

(2) 발행일: 2016년 05월 17일

(2) 납입을 맡을 기관: (주)국민은행 명동대기업금융센터

8. 사채권 관련: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며, 등록필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정한 양식으로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총액인수 및 모집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납입일에 등록청구서와 인감표 2매(각 2매)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을 청구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분에 대하여 "발행회사"로 하여금 일괄등록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일괄등록신청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한다. 단, 발행내역 통지업무를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9. 기타

(1) "본 사채"의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유가증권시장에 공시하고 정관에 정한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청약금액의 100%)은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 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상기 (3)에 따른 일정 변경을 포함하여 "본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가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